

사업주 지원제도

1.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 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지원내용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1년 한도) ※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총 40만원)	우선지원기업 해당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1년 한도)
대규모기업	해당없음	월 10만원
공통	-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 1년 한도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장려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즉시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될 경우 일괄 지급	

지원방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사업주) -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고용센터)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제출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지원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